

제주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591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 5. 11. 접수 제441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액 5,950만 원, 보증기한 2016. 4. 11.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은 만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증액 5,525만 원, 보증기한 2021. 4. 9.까지로 변경 및 연장되었는데, C는 2020. 5. 14.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9. 4. D은행에 56,080,7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와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43240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9. 23.「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4,816원과 그 중 56,004,816원에 대하여 2020. 9. 4.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은 2020. 5. 11.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4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전 원고와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는 2020. 5. 14.부터 D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는바, 적어도 위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채무자인 C와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15억 원 가량인데, C가 증여계약 당시 가액 1,554,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C가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